

異議가 없으므로 討論 省略을 宣布합니다.

그러면 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.

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이 있음)

그러면 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議事日程 第4項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.

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이 있음)

議事日程 第4項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5. 釜山直轄市沙下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(區廳長提出)

(14時43分)

○委員長 金信祐 議事日程 第5項 沙下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

本 條例案에 대하여 李泰敬 市民課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市民課長 李泰敬 市民課長 李泰敬입니다.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개정사유는 住民登錄法 施行令이 7月1日附로 改正이 되었습니다.

그 내용에 따르면 電算組織에 의하여 管轄구역외의 居住者에게도 住民登錄 등·초본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

그래서 이 주민등록 등·초본을 發給함에 따른 公印을 使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.

저희 公印條例 2條4項에 “모사전송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

여기에 “모사전송”을 “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” 이 內容을 삼입코자 하는 改正內容입니다. 이상입니다.

(參 照)

釜山直轄市沙下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

(끝에 실음)

○委員長 金信祐 李泰敬 市民課長 수고했습니다.

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沈玩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(參 照)

1. 제안이유

1994. 6. 30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산망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 등·초본이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중계민원 전용 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—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에서 제4항 본문중 “모사전송”을 “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”으로 개정

3. 검토의견

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은 모사전송 또는 전산처리망으로 접수, 처리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원인은 타 관내의 증명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과학 문명의 혜택이며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사료됨.

○專門委員 沈玩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